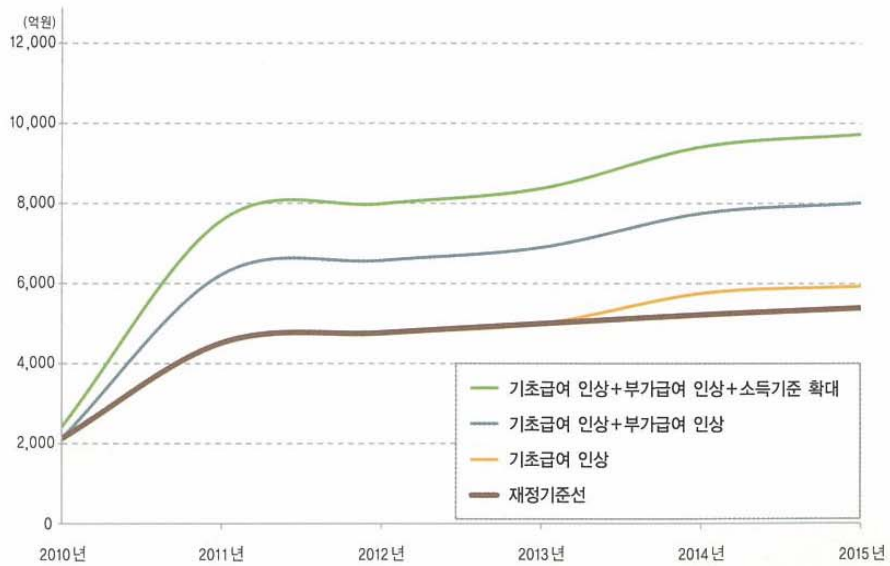


# 2010~2015년 기초장애연금 재정소요 추계

2010. 2



---

박세용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2팀 예산분석관  
02-788-4650  
psy22@nabo.go.kr

---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http://www.nabo.go.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안비용추계 제1호

# 2010 ~ 2015 년 기초장애연금 재정소요 추계

2010. 2

박 세 용



## 발 간 사

국회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입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입법과정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법」은 ‘법안비용추계제도’를 규정하여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재정소요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제도’를 통해 상당규모의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입법에 대한 재정 효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취지에 부응하여, 재정수반입법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법안비용추계」 시리즈를 새롭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석 시리즈는 법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비용추계를 제공함과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추가적인 재정소요액을 제시함으로써, 국회의 법안 및 예산 심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법안비용추계』 시리즈의 첫 번째 발간물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의 제정에 수반되는 재정소요를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의 인상, 수급권자 소득기준의 확대 등 주요 정책변수의 변화를 가정하여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산출하고, 향후 동 제도의 확대와 관련된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총 재정소요액을 추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초장애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0년 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 목 차

## 요 약 / 1

### I. 서 론 / 7

- 1. 추계의 배경 ..... 7
- 2. 추계의 방법 ..... 8

### II. 「기초장애연금법안」 및 2010년도 예산 / 10

- 1. 「기초장애연금법안」 도입 과정 ..... 10
- 2. 「기초장애연금법안」의 주요 내용 ..... 11
- 3. 2010년도 예산 산출내역 ..... 13

### III. 기초장애연금 재정소요 추계 / 18

- 1. 「재정기준선」 추계의 의의 ..... 18
- 2. 수급자 수 추정 ..... 18
- 3. 1인당 급여액 추정 ..... 28
- 4. 기초장애연금 재정소요 ..... 30
- 5. 정부추계와의 비교 ..... 33
- 6. 기존 중증 장애수당과의 비교 ..... 34

#### IV. 정책변수별 추가재정소요 추계 / 37

- 1. 기초급여의 단계적 인상 ..... 37
- 2. 부가급여의 인상을 통한 추가비용 보전 ..... 38
- 3. 수급권자의 소득기준 확대 ..... 40
- 4. 소 결 ..... 41

#### V. 시나리오별 총 재정소요 추계 / 43

- 1. 시나리오 1: 기초급여 인상 ..... 43
- 2. 시나리오 2: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 ..... 44
- 3. 시나리오 3: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과 소득기준 확대 ..... 46
- 4. 소 결 ..... 49

#### VI. 결 론 / 51

참고 문헌 / 55

부 록 / 57



## 표 목차

[표 1] 2010년도 기초장애연금 예산 산출근거 .....	14
[표 2] 2010년 기초장애연금 1인당 수급액 .....	16
[표 3] 「중증장애인연금법안」(정부제출안) 재정소요 추계 .....	17
[표 4] 「중증장애인연금법안」(정부제출안) 채원조달계획 .....	17
[표 5] 연도별 장애등급별 등록장애인수 .....	19
[표 6] 추정장애인수 및 장애인 등록률 .....	20
[표 7] 장애수준별 등록장애인수 및 전년대비 증가율 .....	21
[표 8] 연도별 등록 중증장애인 수(추정) .....	22
[표 9] 등록 중증장애인의 연령대별 비율 .....	23
[표 10] 등록장애인의 연도별 연령대 비율(추정) .....	24
[표 11] 전체 장애인의 연령대별 소득 수준 분포 .....	24
[표 12] 기초장애연금 기초급여 수급자 수(추정) .....	25
[표 13] 기존 장애수당 수급자 수 .....	26
[표 14] 연도별 부가급여 수급자 수(추정) .....	27
[표 15] 「국민연금법」에 따른 A값 전망 .....	28
[표 16] 기초장애연금 1인당 기초급여액(추정) .....	28
[표 17] 기초장애연금 1인당 부가급여액(추정) .....	29
[표 18] 기초장애연금 기초급여 지출소요액(추정) .....	30
[표 19] 기초장애연금 부가급여 지출소요액(추정) .....	31
[표 20] 기초장애연금 재정소요 추계액 .....	31
[표 21] 기초장애연금 부담주체별 지출액 .....	32
[표 22] 기초장애연금 재정소요 추계액 비교 .....	33
[표 23] (중증)장애수당 유지 가정 시 재정소요 .....	35
[표 24] 기초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의 재정소요 추계액 비교 .....	35

[표 25] 정책변수 변화 가정 .....	37
[표 26] 「국민연금법」에 따른 A값과 1인당 기초급여액(추정) .....	38
[표 27] 기초급여 인상 시 추가적 재정소요액 .....	38
[표 28] 부가급여 인상 시 추가적 재정소요액 .....	39
[표 29] 기초급여 수급권자의 소득기준 확대(70%)시 기초급여 수급자 수 .....	40
[표 30] 수급권자 소득기준 확대 시 추가적 재정소요액 .....	41
[표 31] 정책변수 변화에 따른 추가적 재정소요액 .....	42
[표 32] 시나리오 1: 기초급여 인상에 따른 총 재정소요액 .....	43
[표 33] 시나리오 2: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에 따른 추가적 재정소요액 .....	45
[표 34] 시나리오 2: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에 따른 총 재정소요액 .....	45
[표 35]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에 따른 1인당 수급액 .....	46
[표 36] 소득기준 확대에 따른 기초급여 수급권자 수 .....	47
[표 37] 소득기준 확대에 따른 부가급여 수급권자 수 .....	47
[표 38] 시나리오 3: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과 소득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적 재정소요액 .....	48
[표 39] 시나리오 3: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과 소득기준 확대에 따른 총 재정소요액 .....	49
[표 40] 시나리오별 추가적 재정소요액 .....	49
[표 41] 시나리오별 총 재정소요액 .....	50

## 그림 목차

[그림 1] 연도별 등록 중증장애인 수(추정) .....	22
[그림 2] 기초장애연금 부담주체별 지출액 .....	32
[그림 3] 기초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의 재정소요 추계액 비교 .....	36
[그림 4] 정책변수 변화에 따른 추가적 재정소요액 .....	42
[그림 5] 시나리오 1: 기초급여 인상에 따른 총 재정소요액 .....	44
[그림 6] 시나리오 2: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에 따른 총 재정소요액 ...	45
[그림 7] 시나리오 3: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과 소득기준 확대에 따른 총 재정소요액 .....	48
[그림 8] 시나리오별 총 재정소요액 .....	50



## 요 약

### 1. 기초장애연금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

-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존 중증 장애수당제도를 폐지하고, 2010년 7월부터 무기여방식의 사회부조인 기초장애연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2010년 2월 8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의 내용 및 2010년도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기초장애연금의 수급자는 1급, 2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급 이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 수는 전체 32만 6천명임
  - 기초장애연금은 소득보전급여 성격의 기초급여와 비용보전급여 성격의 부가급여로 나누어짐
  -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A값의 5%에 해당하는 월 9.1만원이며, 부가급여액은 소득수준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최소 0원에서 최대 15만원을 지급함
  - 2010년도 예산은 2,200억원(국비 1,474억원) 규모임
- 기초장애연금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액을 추정한 결과,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2010년 2,128억원, 2011년 4,517억원 등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총 2조 7,0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 2010년도 예산에 따른 평균 국고보조율 67%를 반영하는 경우, 국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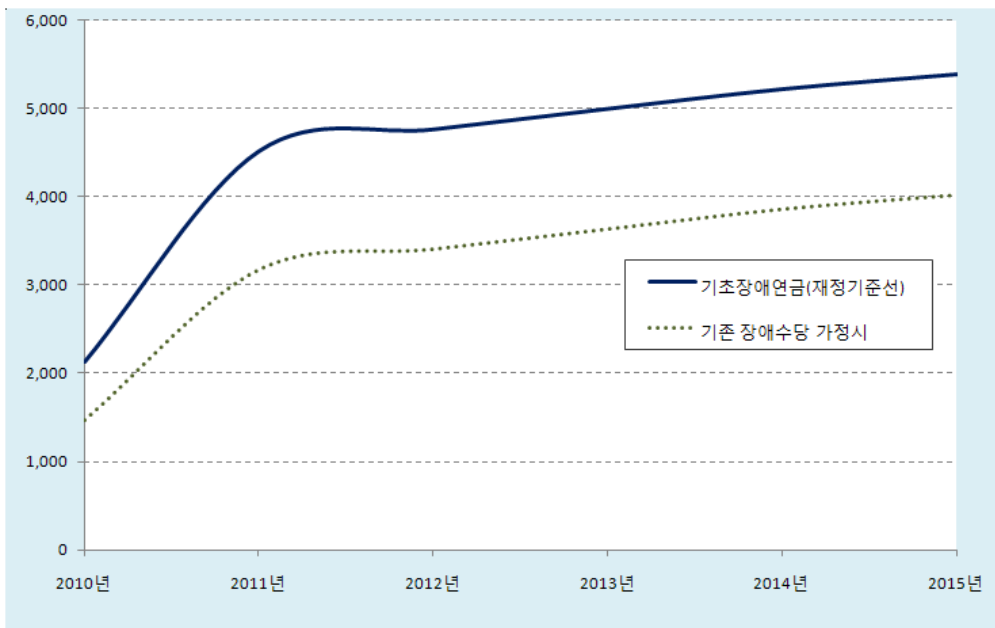
재정소요액은 2010년 1,426억원, 2011년 3,026억원 등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조 8,098억원임

- 정부의 비용추계액은 2010년 2,200억원, 2011년 4,588억원 등 2조 7,235억원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와 비교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223억원, 총액 대비 0.8%의 차이가 남

- 기존 중증 장애수당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기초장애연금 도입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소요는 2010년 659억원, 2011년 1,346억원 등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7,474억원으로, 재정투자는 기존 장애수당 대비 평균 38.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기초장애연금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

(단위: 억원)



주: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제도는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폐지될 예정임

## 2. 정책변수별 추가재정소요 추계

- 향후 기초장애연금제도의 확대를 가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세 가지 정책변수를 설정하였음
  - 「기초장애연금법안」 부칙 제4조는 현재 A값<sup>1)</sup>의 5%인 기초급여를 2028년까지 A값의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2014년에 기초급여를 A값의 6%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기초장애연금법안」 의결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2011년부터 부가급여액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상당 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2011년부터 부가급여를 5만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수급권자의 소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으며, 2010년도 예산 산출내역은 현재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56%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수급권자로 설정하고 있음. 본고에서는 수급권자의 소득기준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결과와 같이 소득하위 70%로 가정하였음

[정책변수의 변화 가정]

정책변수	내용	근거
기초급여 인상	2014년부터 기초급여를 A값의 5%→6%로 인상	「기초장애연금법안」 부칙 제4조
부가급여 인상	2011년부터 부가급여를 5만원씩 인상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 의결 당시 부대의견
수급권자 소득기준 확대	수급권자의 범위를 소득하위 56%→70%로 확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비심사

1)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의 평균 소득월액으로서, 2010년 기준 월 183만원 수준임

- 정책변수 변화에 따른 추가적 재정소요는 기초급여 인상 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81억원, 부가급여 인상 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9,481억원, 소득기준 확대 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3,548억원으로 추정됨

**[변수 1] 기초급여 인상 (「기초장애연금법」 부칙 제4조) : 연간 536억원**

2014년 기초급여를 A값의 5%에서 6%로 인상하는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월 약 19,500원의 기초급여가 인상되어, 23만여 명의 기초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연간 536억원 이상의 추가적 재정 소요 발생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81억원 추가소요)

**[변수 2] 부가급여 인상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부대의견): 연간 1,705억원**

2011년 부가급여 5만원 인상 시, 기존 부가급여 수급자 18만여 명 및 기존 부가급여 미수급자 14만명(18~64세 시설수급자와 전체 차상위초과 수급권자)에 대하여 연간 1,705억원 이상의 추가적 재정 소요 발생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9,481억원 추가소요)

**[변수 3] 수급권자 소득 기준 확대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 : 연간 613억원**

2010년부터 수급권자의 소득 기준을 하위 70%로 확대하는 경우, 18~64세 중증장애인의 14%에 해당하는 5만3천명의 신규 수급권자가 발생하여, 연간 613억원 이상의 추가적 재정소요 발생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3,548억원 추가소요)

[정책변수 변화에 따른 추가적 재정소요액: 2010~2015년]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기초급여 인상	0	0	0	0	536	545	1,081
부가급여 인상	0	1,705	1,806	1,902	1,995	2,073	9,481
소득기준 확대	294	613	635	654	669	682	3,548



### 3. 시나리오별 총 재정소요 추계

- 정책변수의 변화를 결합하여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에 따른 총 재정소요액을 추계한 결과, 현재 계류 중인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2조 7,012억원으로 예상되는데 비하여,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2조 8,093억원에서 최대 4조 5,496억원까지 총 소요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1] 기초급여 인상 : 총 2조8,093억원

「기초장애연금법안」 부칙에 따라 2014년에 기초급여를 A값의 6%로 인상하는 경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081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총 재정소요액은 2조 8,09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2] 기초급여 인상 + 부가급여 인상 : 총 3조7,574억원

「기초장애연금법안」 부칙 및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부가급여를 2011년에 5만원 인상하고, 2014년에 기초급여를 A값의 6%로 인상하는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조 562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총 재정소요액은 3조 7,57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3] 기초급여 인상 + 부가급여 인상 + 소득기준 확대 : 총 4조5,496억원

시나리오 2에 추가하여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소득기준을 소득하위 56%에서 70%로 확대 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조 8,484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총 재정소요액은 4조 5,49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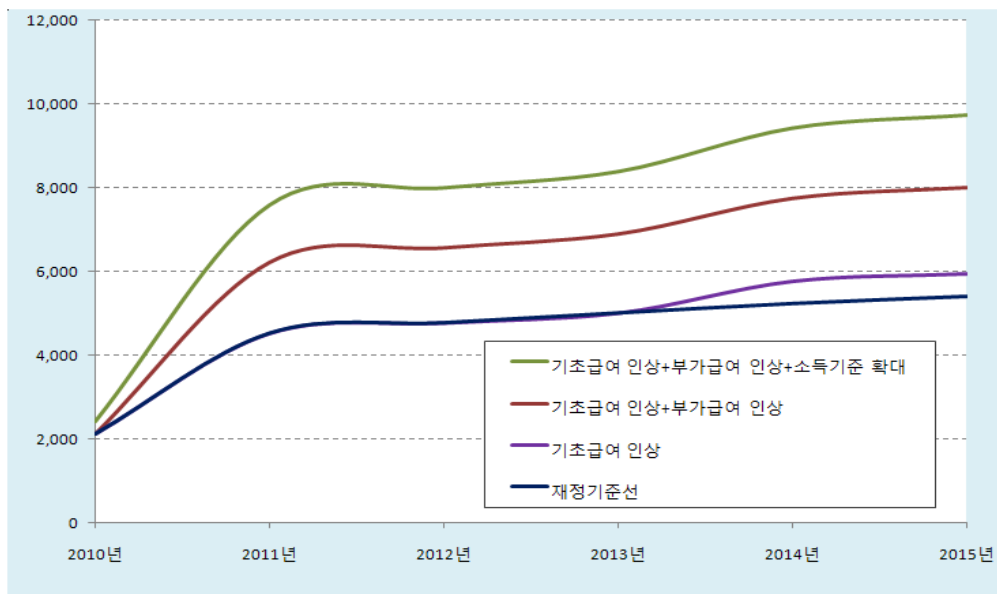
[시나리오별 총 재정소요액: 2010~2015년]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재정기준선	2,128	4,517	4,763	4,997	5,220	5,387	27,012
기초급여 인상	2,128	4,517	4,763	4,997	5,755	5,933	28,093
기초급여 인상 + 부가급여 인상	2,128	6,222	6,570	6,899	7,750	8,006	37,574
기초급여 인상 + 부가급여 인상 + 소득기준 확대	2,422	7,579	7,989	8,375	9,411	9,721	45,496

[시나리오별 총 재정소요액: 2010~2015년]

(단위: 억원)



# I. 서 론

## 1. 추계의 배경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그리고 사회통합에 목표를 두고,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장애연금’이 2010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기초장애연금은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여 일정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무기여 사회부조 방식의 소득보장 제도로서,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장애급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장애연금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게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자격급여(entitlement benefit)로서, 수급자에게는 안정적이고 명확한 수급권을 보장하는 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지출 의무를 부여한다. 따라서 기초장애연금 급여의 설계는 중증장애인의 수급권과 재정소요를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기초장애연금 관련 입법으로는 「중증장애인연금법안」(2009.10.29. 정부제출), 「장애인연금법안」(2009.4.2. 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중증장애인연금법안」(2009.9.15. 윤석용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되어, 2009년 12월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세 법안을 통합한 「기초장애연금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고, 2010년 2월 8일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기초장애연금 예산은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6개월 분 1,519억원(국비기준)으로 확정되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은 부칙을 통해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이하 ‘A값’이라 한다)의 100분의 5로 규정되어 있는 기초급여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분의 10 수준으로 인

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법안 의결 당시 부대의견을 통해 “국회와 보건복지가족부는 2011년부터 부가급여액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상당 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여 향후 동 제도의 확대가 예상된다.

본고는 새로이 시행되는 기초장애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향후 합리적인 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적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취지에,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자격급여인 기초장애연금의 재정지출 규모를 추계하고, 단계적으로 수급자의 범위 및 지급액을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도록 한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 규정된 정책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재정소요액을 추계(baseline projection)(이하 ‘재정기준선’이라 한다)하고, 이를 토대로 수급자의 범위 및 지급액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재정적 효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재정기준선과 대비하여 재정 효과를 검토할 대상은 다양하게 가정할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1)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의 부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초급여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A값의 100분의 10으로 인상하는 경우, 2) 법안 의결 당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부대의견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1년부터 부가급여액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상당 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인상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수급권자의 소득 기준을 전체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하위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세 가지 경우로 한정하여<sup>2)</sup> 검토한다.

## 2. 추계의 방법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를 추계하기 현재 국회 법제

---

2) 그 외에도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 이하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되는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확대하는 등의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의 내용을 전제로 재정 지출 규모를 추정한다. 단,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내용은 2010년도 예산의 산출 근거를 활용하도록 하되, 이때 활용되는 중증장애인의 수, 수급자 수, 1인당 지급액 등 구체적인 수치는 예산 산출근거와 별도로 기존의 공식적인 통계자료 및 연구자료, 보건복지가족부의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며, 충분한 자료의 수집이 곤란한 경우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수치, 유사 자료의 검토, 관찰에 근거하여 가정한 수치 등을 활용한다.

이와 같이 산출한 「기초장애연금법안」 및 2010년도 예산 산출 근거에 반영된 내용에 따라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전제로, 등록장애인의 수, 「국민연금법」상의 가입자 평균 소득 등 사회경제적 변수의 변화를 반영한 재정 기준선을 도출한 후, 주요 정책변수의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측정한다. 주요 정책변수의 변화는 앞서 서술한 세 가지 가정을 활용하고, 각각의 가정에 따른 재정 소요액을 산출한 후, 정책 변화를 결합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최종적인 재정소요를 추계한다.

## II. 「기초장애연금법안」 및 2010년도 예산

### 1. 「기초장애연금법안」 도입 과정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는 2002년 30여개의 장애인 단체가 모여 결성한 ‘장애인연금법제정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제시된 장애인연금법안은 여·야의 제17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반영되었으며, 그 후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 용역을 통해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실시하였다.

제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소득보장법안’과 한나라당의 정화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가초연금법안’이 있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당시 기초노령연금의 도입과 함께 장애인연금의 도입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중증장애인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따로 마련한다’는 부대결의를 채택하였다.

제18대 국회에서는 2009년 4월 2일 민주당의 박은수의원이 「장애인연금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2009년 9월 15일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이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정부는 2009년 4월부터 ‘기초장애연금 도입추진 TF’를 구성하여 2009년 7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기획재정부와 예산안 협의를 거쳐 2009년 10월 29일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13일부터 3개의 법안을 함께 심사하여, 2009년 12월 29일 「기초장애연금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기초장애연금법안」은 2010년 2월 8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2. 「기초장애연금법안」의 주요 내용

### 가. 중증장애인의 범위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 이하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정부제출안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장애 등급의 범위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한 것에 비교할 때, “제3급 이하”로 규정한 대안은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하였다. 그러나 실제 범위는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므로, 향후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 규정 등을 자세히 살필 필요성이 있다.

### 나. 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정부제출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사람은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안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하도록 새로이 규정하였다.

### 다. 기초장애연금의 종류 및 연금액

기초장애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급여액과 지급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급여의 수급 여부 및 수급액

의 산정이 명확하나, 부가급여는 모든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급여의 수급 여부 및 수급액을 알기 어렵다.

### (1)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A값)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 100분의 20을 감액 지급한다. 또한, 수급권자 중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부제출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받는 자(이하 ‘시설수급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안에서는 시설수급자를 기초급여의 지급제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한편, 부칙 제4조에서는 현재 ‘A값’의 100분의 5로 규정된 기초급여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A값’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급여의 수급자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 라. 장애수당과의 관계

부칙 제3조는 경과조치를 통해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장애등급 재심사 및 신청·조사 없이 기초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초장애연금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마. 기초노령연금과의 관계

안 제6조 제4항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2010년도 예산 산출내역

기초장애연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는 자격급여이나, 수급자의 범위, 부가급여 수급액 등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등의 하위 규정에 위임된 관계로 법률의 해석만으로는 기초장애연금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 대통령령이 공포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본 추계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수급자의 범위, 지급액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2010년도 예산 산출내역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가. 2010년도 예산 산출근거

2010년도 예산 산출근거는 기초급여, 부가급여로 구분되어 있고, 급여별 수급자의 수 및 1인당 수급액, 조정계수 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미리 파악할 수 있다. [표 1]은 2010년도 기초장애연금 예산 산출근거이다. 이는 2010년 7월 기초장애연금의 시행 예정에 따라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급여지급액은 총 2,200억원이다. 국비부담액은 2010년 전체 급여 2,200억원에 평균 국고보조율 67%를 곱하여 산출한 급여지급분 1,474억원과 운영비 45억원을 합한 1,519억원이다.

[표 1] 2010년도 기초장애연금 예산 산출근거

급여종류	대상자수	예산규모 (국비+지방비) (백만원)	산출내역	국고 보조율	국비 (백만원)
기초급여	194천명	105,052	18~64세 중증장애인 385,318명 × 수급자 비율 (56%-5.73%) × 91천원 × 6개월 × 부부수급률 조정 (1 - 3.8% × 20%)	67%	70,385
부가급여	226천명	114,969	18~64세 중증장애인 385,318명 × {기초수급자(27.68% × 60천원) + 시설수급자 (5.73% × 70천원) + 차상위계층 (5.4% × 50천원)} × 6개월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195,558명 × {기초수급자 (27.68% × 150천원) + 시설수급자 (5.73% × 70천원) + 차상위계층 (5.4% × 120천원)} × 6개월	67%	77,029
총 예산	326천명	220,021	운영비 4,505백만원 추가	67%	151,919

주. 1. 기초급여는 부부 동시수급일 경우 20%를 감액하여 지급. 부부 동시수급자 비율은 3.8%

2. 18~64세 중증장애인 385,318명,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195,558명

3. 기초수급자 비율 27.68%, 시설수급자 5.73%, 차상위계층 5.4%

자료: 「중증장애인연금법안」(2009. 10. 29. 정부제출) 비용추계서

### (1) 수급자 수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된 기초장애연금의 수급자 수는 기초급여 19만 4천명, 부가급여 22만 6천명으로, 두 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경우를 반영한 전체 수급자는 총 32만 6천명이다.

기초급여 수급자 19만 4천명은 18~64세 중증장애인 385,318명 중 50.27%에 해당하는 인원으로서, 18~64세 중증장애인 385,318명은 기존 장애수당제도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기준과 같은 “1급, 2급 등록장애인과 3급 등록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장애인으로서는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의 수이며, 50.27%는 소득 하위 56% 중 시설 수급자에 해당하는 5.73%를 제외<sup>3)</sup>한 수이다.

부가급여 수급권자 22만 6천명은 18~64세 중증장애인 385,318명,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195,558명을 합한 580,876명에,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일반기초수급자”라 한다)(27.68%), 시설수급자(5.73%), 차상위계층(5.4%)에 해당하는 38.81%를 곱한 인원이다.

부가급여는 「기초장애연금법안」에서 수급권자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부가급여의 수급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예산에 의해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2010년도 예산은 동 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도 차상위를 초과하는 자에 대한 부가급여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차상위 초과자는 부가급여의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수급자 3만 3천여 명은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를 둘 다 수급하지 못하므로, 기초장애연금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 도입에 따른 소득 보전 효과가 없다.

## (2) 1인당 수급액

기초급여는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의 5%에 해당하는 금액(2010년 기준 9.1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2010년도 예산에는 시설수급자에 대한 기초급여 지급분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기초장애연금법안」에서는 시설수급자도 기초급여를 수급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부부가 동시에 기초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의 20%를 감액한다.

부가급여는 기초노령연금 수급(65세 이상) 여부와 소득수준(일반기초수급자,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소득수준이 차상위계층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18~64세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반기초수급자에게는 월 6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5만원을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

3) 현재 계류 중인 「기초장애연금법안」에는 시설수급자에 대한 기초급여 지급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중증장애인 중 5.73%에 해당하는 시설장애인이 기초급여 수급자에 포함된다.

반기초수급자에게 월 15만원, 시설수급자에게 월 7만원을 지급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 법안의 시행일 이전까지 65세에 달한 자에 한하여 월 12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 해당자에게는 월 5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표 2]는 기초장애연금의 1인당 월 수급액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으로, 기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액도 함께 기재하였다.

[표 2] 2010년 기초장애연금 1인당 수급액

(단위: 원/월)

	연령	장애수당 (기존)	기초장애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소계
기초	18세~64세	130,000	91,000	60,000	151,000
	65세 이상	130,000	-	150,000	150,000
차상위	18세~64세	120,000	91,000	50,000	141,000
	65세 이상	120,000	-	120,000	120,000
차상위초과	18세~64세	-	91,000	-	91,000
	65세 이상	-	-	-	0
시설	18세~64세	70,000		70,000	70,000
	65세 이상	70,000	-	70,000	70,000

주: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제도는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폐지될 예정임

## 2. 정부의 재정소요 추계액

[표 3]은 정부가 제출한 「중증장애인연금법안」(2009.10.29)에 첨부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비용추계액이다. 이는 운영비를 제외한 순 급여액으로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재정소요는 2010년 6개월분 2,200억원, 2011년 4,588억원, 2012년 4,803억원 등이다. 매년 연 평균 5.8%의 급여 증가율을 보인다.

[표 3] 「중증장애인연금법안」(정부제출안) 재정소요 추계 : 2010 ~ 2014년

(단위: 억원)

연도		2010 (6개월)	2011	2012	2013	2014
내용별	기초급여	1,051	2,162	2,243	2,299	2,355
	부가급여	1,150	2,426	2,560	2,702	2,850
	합계	2,200	4,588	4,803	5,001	5,205
부담 주체별	국비	1,474	3,074	3,218	3,351	3,488
	지방비	726	1,514	1,585	1,650	1,718

자료: 「중증장애인연금법안」(2009. 10. 29. 정부제출) 비용추계서

[표 4]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원조달계획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2조 7,235억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연도별 예산액은 [표 3]의 금액과 1% 내외의 차이가 있다.

[표 4] 「중증장애인연금법안」(정부제출안) 재원조달계획 : 2010 ~ 2019년

(단위: 억원)

	2010 (6개월)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중앙정부 (일반회계)	1,474	3,078	3,216	3,331	3,449	3,700	3,984	4,244	4,538	4,838
지방자치단체	726	1,516	1,584	1,641	1,699	1,822	1,962	2,090	2,235	2,383
합계	2,200	4,594	4,799	4,972	5,148	5,522	5,946	6,334	6,773	7,221

주: [표 3]의 비용추계액과 연간 1% 내외의 차이가 있음

자료: 「중증장애인연금법안」(2009. 10. 29. 정부제출) 비용추계서

### Ⅲ. 기초장애연금 재정소요 추계

#### 1. 「재정기준선」 추계의 의의

재정기준선 추계(baseline projection)란 현재의 법과 정책이 장래에도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정책 대상 인구의 증감, 물가상승 및 소득수준 향상 등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변수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정소요액을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법과 정책은 일종의 상수로 간주하고 정책 변화요인은 배제하여 추계하므로, 향후의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재정소요 규모를 설정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과는 성격과 용도가 다르다.

재정기준선 추계는 단년도 중심의 예산 분석에서 시계를 확장하여 중장기적 재정상태에 대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향후 도입할 수 있는 정책 변화의 효과를 가늠하게 하는 중립적인 기준(benchmark)으로 활용된다. 정책이 변화하는 경우에 대한 재정소요를 재정기준선과 비교함으로써, 그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초장애연금법안」과 2010년도 예산의 산출 내역을 기준으로, 2010년 이후의 기초장애연금 급여에 대한 재정기준선을 추계한다.

#### 2. 수급자 수 추정

##### 가. 중증장애인 수 추정

「기초장애연금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

로서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 이하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정확한 중증장애인의 범위가 결정된다.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증장애인은 “1급, 2급 등록장애인과 3급 등록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는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로서, 기존 장애수당제도의 중증장애인 지급기준과 동일하다.

[표 5]는 2003년 이후의 등급별 등록장애인수이다. 등록장애인의 수는 장애수당 지급액이 큰 폭으로 인상된 2007년 이후에도 매년 약 7%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중 1급, 2급 등에 해당하는 중증 등록장애인의 수는 장애범주가 확대된 2003년 이후 연평균 7%대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2007년 이후로 상승률이 둔화되어 연 평균 3.9%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표 5] 연도별 장애등급별 등록장애인수: 2003~2009년

(단위: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6
1급	145,943	158,819	173,076	189,334	199,571	207,804	220,403
2급	279,607	299,463	320,723	341,474	349,990	354,139	371,600
3급	276,386	297,858	322,677	346,754	368,035	394,633	426,101
4급	203,941	223,181	246,852	273,317	297,028	324,537	354,177
5급	243,818	280,465	323,265	367,255	406,764	447,729	489,824
6급	304,520	351,208	402,850	449,192	483,501	518,123	557,339
합계	1,454,215	1,610,994	1,789,443	1,967,326	2,104,889	2,246,965	2,419,444

주: 매년 연말 기준이며, 2009년은 6월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향후 기초장애연금의 수급자가 되는 중증장애인의 수를 예측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중증 등록장애인의 증가 추세와 장애출현율, 장애등록률 등을 관찰하도록 한다. 2009년 현재 장애인 등록률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의 공식적인 장애인 등록률은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제시된

77.7%이다. 2005년 조사 당시 장애인구는 167만명 수준이었으나, 2007년 장애 수당 확대와 장애인 관련 혜택 및 권익 의식의 증가로 인해 2009년 6월 현재 242만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05년 당시 산출한 장애인 추계인구 전체에 해당하는 215만명보다 많은 규모이다. 2000년과 2005년의 장애인 등록률은 각각 66.1%와 77.7%로, 그 이후에도 등록장애인수가 연 평균 7%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볼 때, 장애인 등록률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어 향후 등록장애인수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2000년 실태조사에 의한 장애출현율은 2.98%였음에 반하여 2005년 장애출현율은 4.50%로 증가하였다. 장애출현율은 장애범주 확대 및 장애발생위험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2007년 장애범주가 확대됨으로 인해 2009년의 장애출현율은 2005년의 장애출현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략 2009년의 장애출현율을 6% 수준으로만 가정하는 경우에도, 장애 등록률은 83% 수준이 되므로, 향후에도 수년간 등록장애인의 수가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이상의 추론을 종합하여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이 되는 중증 등록장애인의 수는 급격한 증가율의 감소 없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나, 그 증가세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6] 추정장애인수 및 장애인 등록률: 2000년, 2005년

(단위: 명, %)

	2000	2005	2009
총인구(A)	47,008,111	48,138,077	48,746,693
추정장애인수(B)	1,449,496	2,148,686	-
등록장애인수(C)	958,196	1,669,329	2,419,444
장애출현율(B/A)	3.09	4.50	-
등록장애인수 비율(C/A)	2.04	3.47	4.96
장애인 등록률(C/B)	66.1	77.7	-

주: 등록장애인수는 해당년도 실태조사 시점(6월) 기준이므로 연말 등록장애인수와 차이가 있음  
 자료: 통계청 장애인구추계 및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표 7]은 연도별, 장애수준별 중증장애인의 수이다. 3급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는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 관한 통계가 없어 그 수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3급 장애인 중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의 비율이 12.5% 이므로<sup>4)</sup> 이 추계에서는 3급 등록장애인의 약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중증장애인인 것으로 가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수를 추계하였다.

[표 7] 장애수준별 등록장애인수 및 전년대비 증가율: 2003~2009년

(단위: 명,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합계	
	장애인 수	증가율	장애인 수	증가율	장애인 수	증가율
2003	453,189	-	1,001,026	-	1,454,215	-
2004	488,068	7.7	1,122,926	12.2	1,610,994	10.8
2005	526,067	7.8	1,263,376	12.5	1,789,443	11.1
2006	565,483	7.5	1,401,843	11.0	1,967,326	9.9
2007	586,365	3.7	1,518,525	8.3	2,104,889	7.0
2008	601,406	2.6	1,645,559	8.4	2,246,965	6.7
2009.6	634,613	5.5	1,784,831	8.5	2,419,444	7.7

주: 중증장애인은 “1급, 2급 등록장애인과 3급 등록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는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를 의미하며, 3급 장애인의 10%를 중증장애인으로 가정하여 반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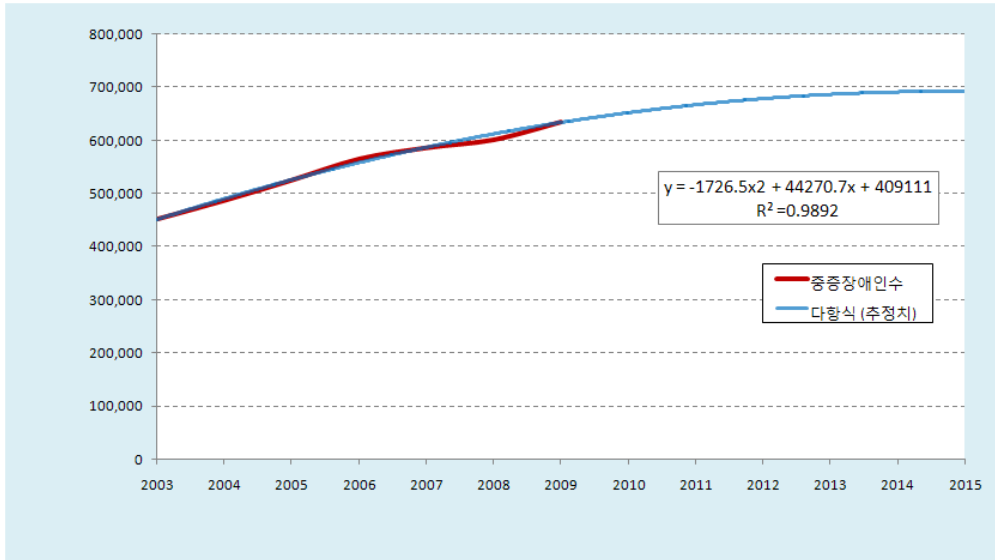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자료를 근거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그림 1]은 [표 7]의 중증 등록장애인 수를 바탕으로 추세선을 도출한 것으로, 점차 상승률이 둔화되는 이차곡선 형태의 추세선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수는 [표 8]에서와 같이 연 평균 1.5% 증가하여 2009년 634,613명에서 2015년까지 692,85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2009년 6월 기준 3급 장애인 중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인의 수는 각각 51,058명 및 2,351명으로, 전체 3급 장애인 426,101의 12.5% 수준이다.

[그림 1] 연도별 등록 중증장애인 수(추정): 2009~2015년

(단위: 명)



[표 8] 연도별 등록 중증장애인 수(추정): 2009~2015년

(단위: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634,613	652,781	667,701	679,168	687,183	691,744	692,853

## 나. 수급자 수 추계

기초장애연금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며,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2010년도 예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의 기준을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56%로 반영하였다. 기초장애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수급권자 수를 별도로 산출하도록 한다.

### (1) 기초급여 수급자 수

기초급여는 기초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는 중복 지급을 피하기 위해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기초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이미 기초노령 연금을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sup>5)</sup>, 18~64세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 수준이 전체 중증장애인의 56% 이하에 있는 자가 기초급여의 수급자가 된다. 전체 중증장애인 중 18~64세에 해당하는 자의 비율과 그 중 전체 중증장애인의 56%에 해당하는 자의 비율을 산출하여 기초급여 수급자의 수를 구한다.

[표 9] 등록 중증장애인의 연령대별 비율: 2007~2009년

(단위: 명, %)

	2007		2008		2009.6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17세	51,183	8.7	52,595	8.7	55,961	8.8
18~64세	365,420	62.3	368,768	61.3	385,444	60.7
65세 이상	169,761	29.0	180,044	29.9	193,208	30.4
합 계	586,365	100.0	601,406	100.0	634,613	100.0

주: 2007년, 2008년은 연말 기준. 2009년은 6월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의 전국장애인현황 연령별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취합

[표 9]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증장애인의 연령대별 비율이다.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매년 0.5~0.9%p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18~64세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매년 0.6~1%p가량 감소하고 있다. 이는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이에 따라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6월 중증장애인의 연령별 인구비율과 2010년부터 2015년의 장래인구추계의 연령대별 인구를 곱하여 산출한 중증장애인 수 추계치를 활용하여 추정된 연도별 등록장애인의 연령대별 비율은 [표 10]과 같다.

5)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이 중증장애인의 소득수준보다 높다.

[표 10] 등록장애인의 연도별 연령대 비율(추정): 2010~2015년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세~17세	8.9	8.5	8.1	7.7	7.2	6.8
18~64세	60.7	60.6	60.5	60.3	60.1	59.9
65세 이상	30.4	30.9	31.4	32.0	32.7	33.3

연령대별 소득분포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전체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56%에 해당하는 자의 비율과 18~64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56%에 해당하는 자의 비율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연령별 소득 수준에 관한 최근의 자료는 2004년도 전체 장애인의 연령별 소득수준 분포 자료([표 11])로서, 이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대비 150%이하 18~64세 장애인의 분포와 65세 이상 장애인의 분포가 약 52.4%와 52.2%로 비슷하여, 전체 장애인의 소득분포는 18~64세나 65세 이상이나 큰 차이가 없다.

[표 11] 전체 장애인의 연령대별 소득 수준 분포

(단위: 명, %)

	17세 이하	18 ~ 64세	65세 이상	전 체
수급자	9,947	192,245	84,424	286,616
	11.5	19.6	18.2	18.7
차상위	16,512	71,390	31,480	119,382
	19.2	7.3	6.8	7.8
차차상위	16,348	251,939	125,702	393,989
	19.0	25.6	27.2	25.7
150%이상	43,322	467,609	221,304	732,235
	50.3	47.6	47.8	47.8
합 계	86,129	983,383	462,910	1,532,222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변용찬 외,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이와 같은 소득분포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기초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범위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균일한 분포를 보이므로, 18~64세 중증 등록장애인 중 기초급여 수급권자의 소득기준도 전체 기초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소득기준과 마찬가지로 소득하위 56%이다. 연도별 중증장애인 수에 18~64세 중증장애인의 연도별 인구 비율을 곱하고, 수급권자 비율 56%를 곱하여 산출한 기초급여 수급자 수는 다음과 같다.

[표 12] 기초장애연금 기초급여 수급자 수(추정): 2010~2015년

(단위: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중증장애인 수(A)	634,613	652,781	667,701	679,168	687,183	691,744
18~64세 비율(B)	60.7	60.6	60.5	60.3	60.1	59.9
기초급여 수급자수 (C=A×B×56%)	215,718	221,528	226,217	229,341	231,278	232,039

기초장애연금을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한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하면 기초장애연금의 부부 수급자의 비율은 3.8%이므로, 본 추계에서는 이를 그대로 활용한다. 이는 향후 기초급여 수급액을 계산할 때, 전체 100% 급여액 중 3.8%의 인원에게 대해 20%의 수급액을 감액하도록 조정계수  $0.9924(= 1 - 3.8\% \times 20\%)$ 를 곱함으로써 적용한다.

## (2) 부가급여 수급자 수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서, 부가급여액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급여의 지급 기준 및 금액은 대통령령이 공포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으나, 2010년도 예산 산출근거에 따르면 기존 장애수당 지급기준과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소득기준은 일반 기초수급자,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하며,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2010년도 예산의 산출근거는 연령대와 무관하게 일반기초수급자의 비율은 27.68%, 시설 수급자 5.73%, 차상위계층 5.4%로 계상하였다.

부가급여 수급권자의 유형별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2007년 이후의 장애수당 수급자 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이에 따르면, 장애수당을 수급한 일반기초수급자의 수는 2009년 6월 기준 약 143,083명, 시설수급자 30,700명, 차상위계층 27,505명으로, 2009년 6월 기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추정인원 578,652명의 각각 24.7%, 5.3%, 4.7% 수준이다. 지난 3년간 장애수당 수급자인 일반기초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중증장애인의 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2007년 이후 장애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수급자의 수는 매년 수천 명씩 증가하고 있다.

[표 13] 기존 장애수당 수급자 수: 2007~2009년 반기별

(단위: 명)

	중증장애인				전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합계	기초수급자		차상위	합계
	일반	시설			일반	시설		
2007.12	145,163	30,061	13,854	189,078	319,211	38,441	40,545	398,197
2008.06	144,040	30,575	18,486	193,101	325,000	39,379	54,433	418,812
2008.12	141,702	30,927	22,306	194,935	328,422	40,153	64,838	433,413
2009.06	143,083	30,700	27,505	201,288	342,844	40,621	82,924	466,389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부가급여 수급자의 유형별 비율을 가정함에 있어, [표 11]의 연령대별 소득 분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18~64세와 65세 이상 장애인의 소득분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연령대에 따라 수급자 비율을 구분하지 않는다. 부가급여

수급자의 유형별 비율은 장애수당의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일반기초수급자 25%, 시설 수급자 5.5%로 가정하고,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 차상위계층의 비율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에서 7%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14]는 전체 중증장애인 수에 각각의 연령대별 비율과 소득수준별 분포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연도별 부가급여 수급자 수이다.

18~64세의 시설수급자의 경우, 정부안은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존 장애수당과 같은 금액인 부가급여 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부가급여 수급자수에 포함시켰으나, 「기초장애연금법안」이 시설수급자에 대해 기초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부가급여의 지급여부가 불명확하다. 이는 대통령령이 공포되기까지는 미정(未定) 사항이나, 신규 수급자를 제외한 기존 다른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 기초장애연금의 수급으로 인해 수급액이 크게 증가한 바 없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18~64세 시설수급자에게 기초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sup>6)</sup>.

[표 14] 연도별 부가급여 수급자 수(추정): 2010~2019년

(단위: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중증장애인 수		634,613	652,781	667,701	679,168	687,183	691,744
18~64세	기초	96,303	98,896	100,990	102,385	103,249	103,589
	시설	21,187	21,757	22,218	22,525	22,715	22,790
	차상위	19,261	21,757	24,238	26,620	28,910	29,005
65세 이상	기초	48,231	50,427	52,415	54,333	56,177	57,588
	시설	10,611	11,094	11,531	11,953	12,359	12,669
	차상위	9,646	11,094	12,579	14,127	15,730	16,125

주: 18~64세 시설수급자는 「기초장애연금법안」의 내용에 따라 기초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6) 18~64세 시설수급자의 부가급여 수급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며, 동 가정은 실제 정책과는 무관하게 추계를 위한 가정임을 명확히 해두고자 한다.

### 3. 1인당 급여액 추정

#### 가. 기초급여액 추정

기초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A값)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표 15]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009년 4월 추계한<sup>7)</sup> 2010~2013년의 A값이다.

[표 15] 「국민연금법」에 따른 A값 전망: 2010~2013년

(단위 : 원)

	A값	기초급여액(A값의 5%)
2010	1,830,107	91,505
2011	1,860,211	93,011
2012	1,887,082	94,354
2013	1,915,728	95,786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2009.4)

2014년 이후의 A값 추계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2014년 이후의 A값 상승률은 직전년도 A값 상승률인 1.5%를 반영한다. 이를 통해 산출한 월별, 연도별 기초급여액은 [표 16]과 같다. 2010년의 경우 6개월간 실시하므로 반년분을 반영하여 연도별 기초급여액을 산출한다.

[표 16] 기초장애연금 1인당 기초급여액(추정): 2010~2015년

(단위: 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초급여액(월)	91,505	93,011	94,354	95,786	97,223	98,681
기초급여액(년)	549,030	1,116,132	1,132,248	1,149,432	1,166,676	1,184,176

주: 2010년은 7월부터 시행하므로 6개월분 반영

7) 국민연금연구원, 「중기재정추계모형 개선 및 중기재정전망」, 2009.4.



## 나. 부가급여액 추정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부가급여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2010년도 예산에 제시된 부가급여액은 앞서 [표 2]에 제시된 금액과 같으며, 다만 시설수급자의 기초급여 수급으로 인해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한다.

연도별 부가급여를 산출하기 위해 기존 장애수당의 인상률을 검토한 결과, 장애수당은 2007년 획기적으로 인상된 후 2010년 현재까지 인상된 바 없으므로, 상승률을 산출하기 곤란하다. 정부가 제출한 「중증장애인연금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는 물가에 연동된 연 3%의 부가급여액 상승률을 가정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한다.

[표 17] 기초장애연금 1인당 부가급여액(추정): 2010~2015년

(단위: 원/월)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8~64세	기초	60,000	61,800	63,654	65,564	67,531	69,556
	시설	0	0	0	0	0	0
	차상위	50,000	51,500	53,045	54,636	56,275	57,964
65세 이상	기초	150,000	154,500	159,135	163,909	168,826	173,891
	시설	70,000	72,100	74,263	76,491	78,786	81,149
	차상위	120,000	123,600	127,308	131,127	135,061	139,113

#### 4. 기초장애연금 재정소요

##### 가. 기초급여

앞서 산출한 연도별 기초급여 수급자 수와 1인당 지급액을 곱하여 산출한 기초급여 지출액은 [표 18]과 같다. 부부 동시수급으로 인해 20% 감액이 되는 수급자의 비율은 3.8%이므로, 그에 따른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0.9924<sup>8)</sup>를 곱하였다. 이와 같이 산출한 기초급여 지출액은 2010년 6개월간 1,175억원, 2011년 2,454억원 등 2015년까지 총 1조 4,19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18] 기초장애연금 기초급여 지출소요액(추정): 2010~2015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수급자수(명)	215,718	221,528	226,217	229,341	231,278	232,039	-
1인당 급여액(원)	549,030	1,116,132	1,132,248	1,149,432	1,166,676	1,184,176	-
지출소요액(억원)	1,175	2,454	2,542	2,616	2,678	2,727	14,192

##### 나. 부가급여

앞서 산출한 연도별 소득수준별 부가급여 수급자 수와 1인당 지급액을 곱하여 산출한 부가급여 지출소요액은 [표 19]와 같다. 이와 같이 산출한 부가급여 지급액은 2010년 6개월간 953억원, 2011년 2,063억원 등 2015년까지 총 1조 2,82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8) 조정계수  $0.9924 = 1 - (20\% \times 3.8\%)$

[표 19] 기초장애연금 부가급여 지출소요액(추정): 2010~2015년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18~64세	기초	347	733	771	806	837	865	4,359
	시설	0	0	0	0	0	0	0
	차상위	58	134	154	175	195	202	918
65세 이상	기초	434	935	1,001	1,069	1,138	1,202	5,779
	시설	45	96	103	110	117	123	594
	차상위	69	165	192	222	255	269	1,172
합계		953	2,063	2,222	2,381	2,542	2,661	12,821

#### 다. 총 재정소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재정소요 추계액은 2010년 2,128억원, 2011년 4,517억원 등 2015년까지 총 2조 7,01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0] 기초장애연금 재정소요 추계액: 2010~2015년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기초급여	1,175	2,454	2,542	2,616	2,678	2,727	14,192
부가급여	953	2,063	2,222	2,381	2,542	2,661	12,821
합계	2,128	4,517	4,763	4,997	5,220	5,387	27,012

#### 라. 부담주체별 지출액

기초장애연금의 국고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0년도 예산 및 기존 장애수당의 국고보조율은 67%로 적용되고 있다. 국고보조율 67% 가정 시 기초장애급여 지출액 중 국비 지

출액은 2010년 1,426억원, 2011년 3,026억원 등 2015년까지 총 1조 8,098억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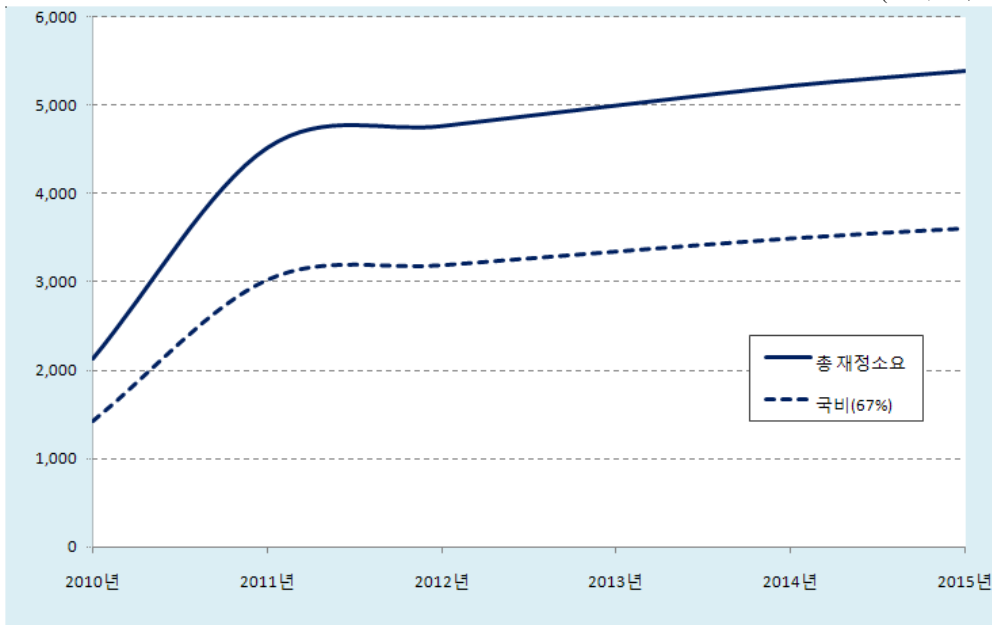
[표 21] 기초장애연금 부담주체별 지출액: 2010~2015년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전체(A)	2,128	4,517	4,763	4,997	5,220	5,387	27,012
국비(A×67%)	1,426	3,026	3,191	3,348	3,497	3,610	18,098
지방비(A×34%)	702	1,491	1,572	1,649	1,722	1,778	8,914

[그림 2] 기초장애연금 부담주체별 지출액: 2010~2015년

(단위: 억원)



## 5. 정부추계와의 비교

지금까지 추정된 기초장애연금 재정소요 추계액과 정부가 제출한 「중증장애연금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 결과를 비교한 결과, 2010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가 정부 추계에 비해 약 72억원 (3.4%)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후 연간 -2.4~1.4%의 차이를 보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액 기준 -223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전체 지출액 2조 7,012억원 중 0.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추계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인구 비율이 정부 추계에 비해 약간 적게 가정되었고, 중증장애인 수의 증가율이 높게 가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장애연금법안」에서 시설수급자에 대해 기초급여를 지급하도록 수정되어 이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추계 결과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표 22] 기초장애연금 재정소요 추계액 비교: 2010~2015년

(단위: 억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A)	2,128	4,517	4,763	4,997	5,220	5,387	27,012
정부 추계(B)	2,200	4,594	4,799	4,972	5,148	5,522	27,235
차액(C=A-B)	-72	-77	-36	25	72	-135	-223
백분율(C/B)	-3.3	-1.7	-0.8	0.5	1.4	-2.4	-0.8

## 6. 기존 중증 장애수당과의 비교

2010년 7월부터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제도는 흡수·폐지된다. 기초장애연금 도입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 중증 장애수당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가정하는 경우의 재정소요를 추정하여 기초장애연금의 재정소요액과 비교한다.

중증 장애수당은 2010년 6월까지 유지될 예정으로,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일반기초수급자 및 시설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225,516명의 중증장애인(일반기초수급 중증장애인 160,811명, 시설수급자 33,311명, 차상위계층 31,394명)에 대해 일반기초수급자 월 13만원, 중증 시설수급자 월 7만원, 중증 차상위계층은 12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장애수당 예산 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국비부담분(6개월 분)은 1,090억원으로, 기초장애연금 예산 1,474억원(국비, 6개월 분)에 비해 384억원이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기초장애연금의 실시로 인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급여 증가분은 중증 장애수당 예산의 35%가 증가한 수준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기준으로는 장애수당 예산 1,627억원, 기초장애연금 2,200억원으로 573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향후에도 계속 장애수당이 유지되는 경우의 2010년 재정소요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기초장애연금 2,128억원, 중증 장애수당 1,469억원([표 23] 참조)으로, 기초장애연금의 도입으로 인해 659억원, 중증 장애수당 지출액 대비 44.9%가 증가하였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추계 결과를 비교한 결과, 기초장애연금의 시행으로 인한 기존 중증장애수당 대비 추가 재정소요액은 2010년 659억원, 2010년 1,346억원 등 2015년까지 총 7,474억원이며, 평균 38.2%의 재정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24] 참조)

[표 23] (중증)장애수당 유지 가정 시 재정소요: 2010~2015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1인당 급여액 (원/월)	기초	130,000	133,900	137,917	142,055	146,316	150,706	-
	시설	70,000	72,100	74,263	76,491	78,786	81,149	-
	차상위	120,000	123,600	127,308	131,127	135,061	139,113	-
수급자 수 (명)	기초	144,533	149,324	153,404	156,718	159,426	161,176	-
	시설	31,797	32,851	33,749	34,478	35,074	35,459	-
	차상위	28,907	32,851	36,817	40,747	44,639	45,129	-
재정 소요액 (억원)	기초	1,127	2,399	2,539	2,672	2,799	2,915	14,451
	시설	134	284	301	316	332	345	1,712
	차상위	208	487	562	641	723	753	3,374
	합계	1,469	3,171	3,402	3,629	3,854	4,013	19,538
국비부담분(억원)		984	2,124	2,279	2,432	2,582	2,689	13,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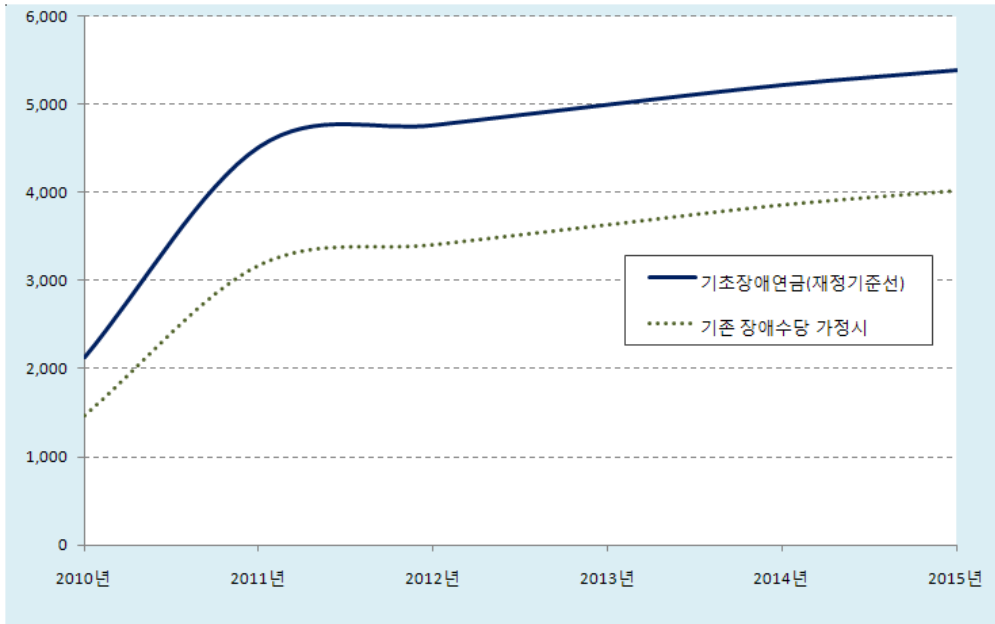
[표 24] 기초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의 재정소요 추계액 비교: 2010~2015년

(단위: 억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기초장애연금(A)	2,128	4,517	4,763	4,997	5,220	5,387	27,012
장애수당(B)	1,469	3,171	3,402	3,629	3,854	4,013	19,539
차액(C=A-B)	659	1,346	1,361	1,368	1,365	1,374	7,474
증가율(C/B)	44.9	42.5	40.0	37.7	35.4	34.2	38.2

[그림 3] 기초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의 재정소요 추계액 비교: 2010~2015년

(단위: 억원)





## IV. 정책변수별 추가재정소요 추계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산출한 재정소요 추계를 바탕으로 1인당 급여수급액 및 수급자수 등의 정책변수를 변화시키는 경우의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산출한다. 변수의 내용은 [표 25]의 가정과 같이 1) 기초급여의 단계적 인상, 2) 부가급여의 인상을 통한 추가비용 보전, 3) 수급권자의 소득기준 확대를 하는 경우의 총 세 가지로 가정한다.

[표 25] 정책변수 변화 가정

정책변수	근거	내용
기초급여 인상	「기초장애연금법안」 부칙 제4조	2014년부터 기초급여를 A값의 5%→6%로 인상
부가급여 인상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 의결 당시 부대의견	2011년부터 부가급여를 5만원씩 인상
수급권자 소득기준 확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비심사 의결 결과	수급권자의 범위를 소득하위 56%→70%로 확대

### 1. 기초급여의 단계적 인상

「기초장애연금법안」 부칙 제4조는 현행 A값의 5%인 기초급여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A값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8년 기초급여액이 A값의 10%에 완만히 도달하도록 순차적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3~4년마다 A값의 1%씩 기초급여의 비율을 인상하여야 한다. 본 추계에서는 일차적으로 2014년에 기초급여를 A값의 5%에서 6%로 인상하는 것을 가정하여 재정소요를 산출한다.

[표 26] 「국민연금법」에 따른 A값과 1인당 기초급여액(추정): 2010~2015년

(단위: 원/월)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A값	1,830,107	1,860,211	1,887,082	1,915,728	1,944,464	1,973,631
변경전(5%)	91,505	93,011	94,354	95,786	97,223	98,681
변경후(6%)	-	-	-	-	116,668	118,418

2014년부터 기초급여액을 A값의 5%에서 6%로 인상하는 경우, 1인당 기초급여는 2014년 기준 월 97,223원에서 116,668원으로 19,445원이 인상하게 되며, 기초급여 수급자는 231,278명이므로, 기초급여 지출액은 2014년 536억원, 2015년 545억원 증가하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81억원의 추가적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된다.

[표 27] 기초급여 인상 시 추가적 재정소요액: 2010~2015년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추가소요	0	0	0	0	536	545	1,081

## 2. 부가급여의 인상을 통한 추가비용 보전

「기초장애연금법안」의 의결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국회 및 보건복지가족부는 2011년부터 「기초장애연금법」의 부가급여액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상당 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하였다.

가장 높은 수준의 부가급여를 받는 일반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의 월 부가급여액은 15만원으로,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조사된 장애로 인한 전체

장애인의 평균 추가비용 15만 9천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금액은 중증장애인이 아닌 전체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평균적인 추가비용이라는 점에서 현 수준의 부가급여액은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미치지 못하므로, 부가급여액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상당 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가급여의 인상이 필요하다.

적정한 수준의 부가급여 인상액을 설정하기 위해 동 조사에 제시된 중증장애인(1~2급)의 장애로 인한 평균적인 추가 비용인 20만 8천원을 활용한다. 이 금액은 전체 장애인 평균 15만 9천원에 비해 평균 4만 9천원이 높은 금액이므로, 이 추계에서는 2011년의 부가급여 인상액을 월 5만원으로 가정하여, 모든 부가급여 수급자에게 적용한다. 부가급여의 5만원 인상은 전체 수급자의 평균 부가급여액을 20만 8천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전부 보전하는 것은 아니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부가급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중증장애로 인한 평균적인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인상한 값이다.

부가급여 인상 시, 기존 부가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8~64세의 시설 수급자와 차상위 초과자에 대해서도 5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기초장애연금법안」에 의한 수급권자인 18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56%의 중증장애인 모두가 부가급여의 수급자가 되는 것으로, 법률상의 기초장애연금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 지급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게 된다. 이를 통해 2011년 기준 부가급여 수급자는 기존 193,268명에서 18~64세의 시설 수급자 21,757명, 차상위 초과자 119,459명이 추가되어 334,485명으로 증가한다. 그 결과 2011년부터 부가급여 지급액은 2011년 1,705억원, 2012년 1,806억원 등이 증가하여 2015년까지 총 9,481억원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된다.

[표 28] 부가급여 인상 시 추가적 재정소요액: 2010~2015년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추가소요	0	1,705	1,806	1,902	1,995	2,073	9,481

### 3. 수급권자의 소득기준 확대

「기초장애연금법안」의 기초가 되었던 관련 법안 중 정부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중증장애인연금법안」(2009.10.29)을 제외한 「장애인연금법안」(2009. 4. 2. 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중증장애인연금법안」(2009. 9. 15. 윤석용의원 대표발의) 및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도 예산요구서는 수급권자의 소득기준을 하위 70%로 정의하고 있었다. 또한 2010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결 사항도 수급권자의 소득기준을 이와 같이 정의한 바 있으므로, 기초장애연금제도의 확대 가정의 하나로 수급권자의 소득기준을 하위 56%에서 70%로 확대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초급여의 경우 수급권자의 비율이 56%에서 70%로 증가함에 따라, 18~64세 중증장애인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5만 3천명인원이 수급자로 전환된다. 그러나 부가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차상위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급여 지급액은 따로 증가하지 않는다. 다만, 앞서 가정한 부가급여 인상과 결합되어 차상위 초과자에 대해서도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표 29]는 기초급여 수급권자의 소득기준 확대(70%)로 인한 기초급여 수급자 수의 증가를 나타낸 것이다. 2010년 21만 6천명인 기초급여 수급권자의 수는 소득기준 확대로 인해 26만 9천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표 29] 기초급여 수급권자의 소득기준 확대(70%)시 기초급여 수급자 수: 2010~2015년  
(단위: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변경 전	215,718	221,528	226,217	229,341	231,278	232,039
변경 후	269,647	276,910	282,771	286,677	289,098	290,048

수급자의 소득기준 확대에 의해 2010년 294억원, 2011년 613억원 등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3,548억원의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0] 수급권자 소득기준 확대 시 추가적 재정소요액: 2010~2015년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추가소요	294	613	635	654	669	682	3,548

#### 4. 소 결

이상의 세 가지 정책변수를 변화시키는 경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였다. 단일한 정책변수의 변화에 따른 추가적 재정소요액은 부가급여 인상 > 수급권자 소득기준 확대 > 기초급여 인상의 순으로 크다.

기초급여 인상은 2014년 기준 연간 약 536억원이 소요되며, 18~64세의 기초급여 수급자의 수급액을 월 1만 9,500원 증가시켜 기존 수급자 약 23만명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부가급여 인상은 2011년 기준 연간 약 1,705억원이 소요되며, 현행 부가급여 수급액을 5만원 인상하여 기존 부가급여 수급자 18만명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사실상 부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18~64세 시설수급자 및 차상위 초과 수급자 약 14만명에 대해 부가급여를 새로이 지급하는 효과가 있다.

수급권자 소득기준 확대는 2011년 기준 연간 613억원이 소요되며, 소득하위 56~70%에 해당하는 5만3천명의 신규 수급자에 대한 소득보장 효과가 있다. 단, 수급권자 소득기준을 확대하는 경우 전반적인 수급자의 수가 증가하므로, 동시에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를 인상하는 경우 변수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더 큰 재정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표 31] 정책변수 변화에 따른 추가적 재정소요액: 201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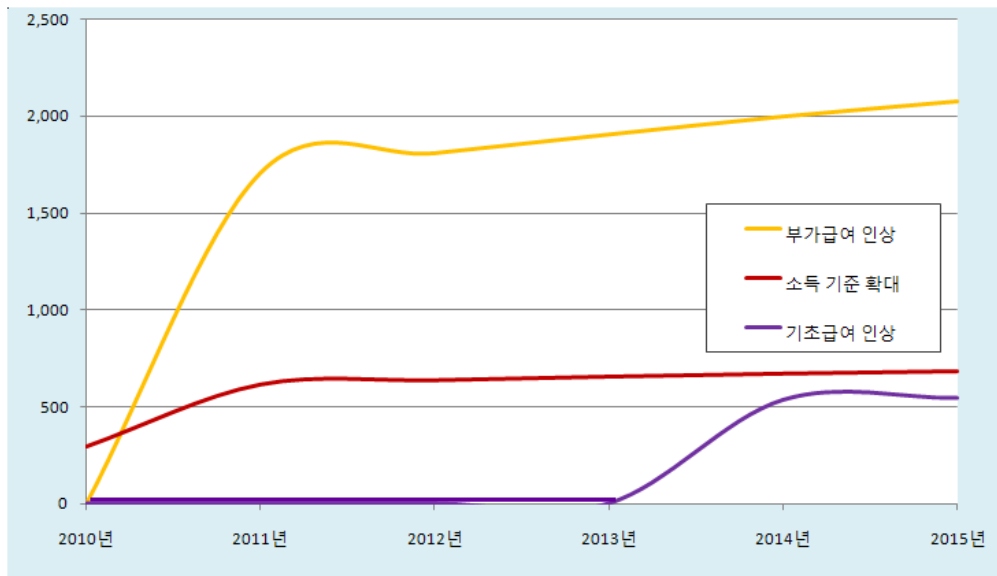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기초급여 인상	0	0	0	0	536	545	1,081
부가급여 인상	0	1,705	1,806	1,902	1,995	2,073	9,481
소득기준 확대	294	613	635	654	669	682	3,548

- 주: 1. 기초급여 인상: 기초급여를 2014년 A값의 5%에서 6%로 인상  
 2. 부가급여 인상: 부가급여를 2011년 5만원씩 인상  
 3. 소득기준 확대: 수급권자의 소득기준을 소득하위 56%에서 70%로 확대

[그림 4] 정책변수 변화에 따른 추가적 재정소요액: 2010~2015년

(단위: 억원)



## V. 시나리오별 총 재정소요 추계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제시된 세 가지 정책변수의 변화를 결합한 시나리오별 재정소요를 추계한다. 세 가지 정책변수를 자유롭게 결합하는 경우 총 7가지의 시나리오가 도출되나, 본 추계에서는 정책 변화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대표적인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추계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계류 중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을 기초로 「기초장애연금법안」 부칙에 따른 ‘기초급여 인상’을 적용하는 경우,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기초급여 인상’에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부대의견인 ‘부가급여의 인상’을 추가하는 경우, 세 번째 시나리오는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에 2010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의결 결과인 ‘수급권자의 소득기준 확대’를 추가하는 경우이다.

### 1. 시나리오 1: 기초급여 인상

기초급여 인상에 따라 추가되는 재정소요액은 앞서 [표 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4년 536억원, 2015년 545억원으로 총 1,081억원이다. 재정기준선에 기초급여 인상에 따른 추가적 재정소요를 합한 총 재정소요는 2010년 2,128억원, 2011년 4,517억원 등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총 2조 8,093억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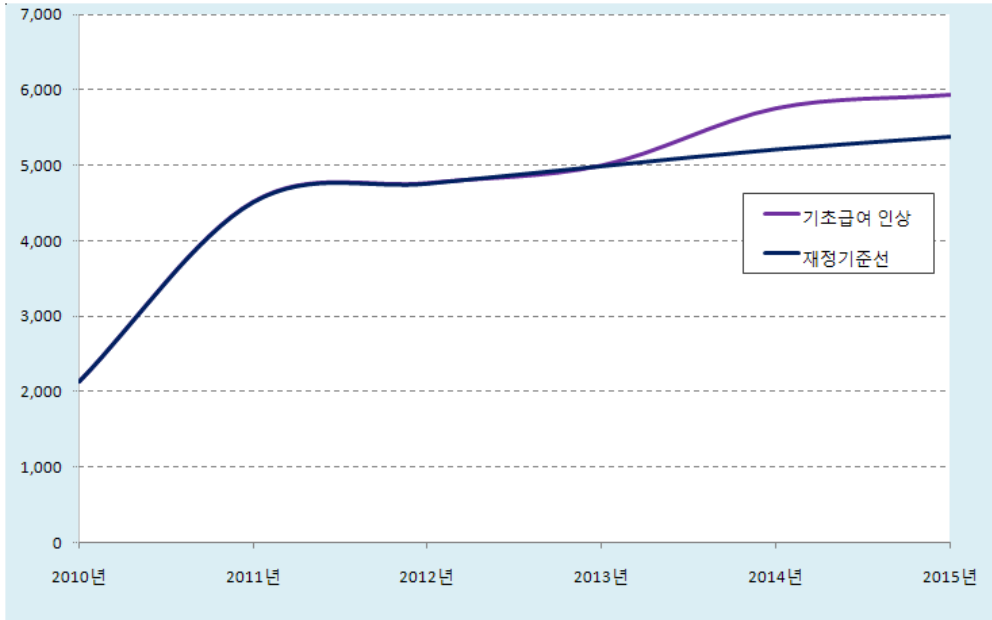
[표 32] 시나리오 1: 기초급여 인상에 따른 총 재정소요액: 2010~2015년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기초급여	1,175	2,454	2,542	2,616	3,213	3,272	15,273
부가급여	953	2,063	2,222	2,381	2,542	2,661	12,821
합계	2,128	4,517	4,763	4,997	5,755	5,933	28,093

[그림 5] 시나리오 1: 기초급여 인상에 따른 총 재정소요액: 2010~2015년

(단위: 억원)



## 2. 시나리오 2: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

시나리오 2에 따라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를 동시에 인상하는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는 상호 독립적이므로 기초급여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과 부가급여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만큼의 추가적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4년 기초급여 인상에 따라 추가되는 재정소요액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81억원이며, 2011년 부가급여 인상에 따라 추가되는 재정소요액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9,481억원이므로,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에 따른 추가적 재정소요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조 562억원이다. 연도별 추가 재정소요액은 [표 3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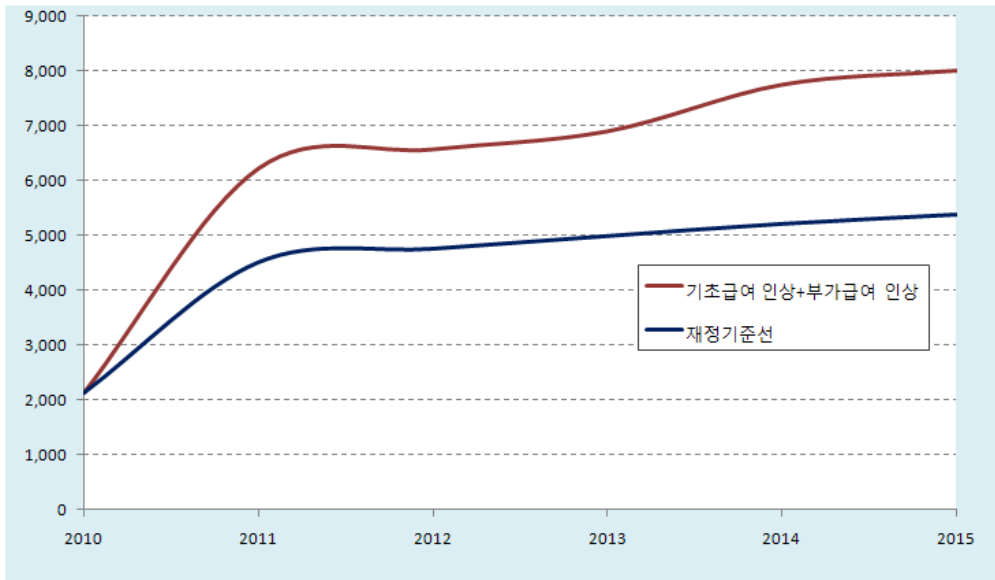
시나리오 2에 따라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를 인상하는 경우 총 재정소요는 재정기준선에 연도별 추가 재정소요액을 합한 2010년 2,128억원, 2011년 6,222억원, 2012년 6,570억원 등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3조 7,5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3] 시나리오 2: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에 따른 추가적 재정소요액: 2010~2015년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기초급여	0	0	0	0	536	545	1,081
부가급여	0	1,705	1,806	1,902	1,995	2,073	9,481
합계	0	1,705	1,806	1,902	2,530	2,618	10,562

[그림 6] 시나리오 2: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에 따른 총 재정소요액: 2010~2015년  
(단위: 억원)



[표 34] 시나리오 2: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에 따른 총 재정소요액: 2010~2015년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기초급여	1,175	2,454	2,542	2,616	3,213	3,272	15,273
부가급여	953	3,768	4,028	4,283	4,537	4,733	22,302
합계	2,128	6,222	6,570	6,899	7,750	8,006	37,574

### 3. 시나리오 3: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과 소득기준 확대

시나리오 3은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과 함께 수급권자 소득기준을 확대하여 수급자 수가 증가하므로,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재정소요가 단일 변수의 변화에 따른 재정소요의 증가액 보다 크게 증가한다. [표 35]는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에 따른 1인당 수급액이며, [표 36] 및 [표 37]은 소득기준 확대에 따른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수급자의 수이다.

2014년 기초급여를 A값의 5%에서 6%로 인상하여, 월 95,786원에서 116,668원으로 수급액이 증가한다. 또한 2011년 부가급여의 상승에 따라 모든 수급자의 부가급여가 5만원씩 인상된다. 기존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않던 18~64세 시설수급자와 전체 차상위초과자에 대해서도 2011년부터 5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표 35]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에 따른 1인당 수급액: 2010~2015년

(단위: 월/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초급여액		91,505	93,011	94,354	95,786	116,668	118,418
부가급여액 18~64세	기초	60,000	110,000	113,300	116,699	120,200	123,806
	시설	0	50,000	51,500	53,045	54,636	56,275
	차상위	50,000	100,000	103,000	106,090	109,273	112,551
	차상위초과	0	50,000	51,500	53,045	54,636	56,275
부가급여액 65세 이상	기초	150,000	200,000	206,000	212,180	218,545	225,102
	시설	70,000	120,000	123,600	127,308	131,127	135,061
	차상위	120,000	170,000	175,100	180,353	185,764	191,336
	차상위초과	0	50,000	51,500	53,045	54,636	56,275

소득기준 확대에 따라 수급권자의 비율이 56%에서 70%로 확대되므로, 기초급여의 수급자 수가 2010년 기준 21만 6천명에서 26만 9천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부가급여 수급자수는 18만 4천명에서 40만 5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행 기초장애연금의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않던 18~64세 시설수급자 및 전체 차상위초과자 22만 1천명이 새롭게 부가급여의 수급자가 된다.

[표 36] 소득기준 확대에 따른 기초급여 수급권자 수: 2010~2015년

(단위: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중증장애인 수(A)	634,613	652,781	667,701	679,168	687,183	691,744
18~64세 비율(B)	60.7	60.6	60.5	60.3	60.1	59.9
기초급여 수급자수 (C=A×B×56%)	269,647	276,910	282,771	286,677	289,098	290,048

[표 37] 소득기준 확대에 따른 부가급여 수급권자 수: 2010~2015년

(단위: 월/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8~64세	기초	96,303	98,896	100,990	102,385	103,249	103,589
	시설	21,187	21,757	22,218	22,525	22,715	22,790
	차상위	19,261	21,757	24,238	26,620	28,910	29,005
	차상위초과	132,897	134,499	135,326	135,148	134,224	134,665
65세 이상	기초	48,231	50,427	52,415	54,333	56,177	57,588
	시설	10,611	11,094	11,531	11,953	12,359	12,669
	차상위	9,646	11,094	12,579	14,127	15,730	16,125
	차상위초과	66,558	68,581	70,235	71,720	73,030	74,864
합 계		404,693	418,106	429,532	438,810	446,394	451,294

시나리오 3에 따라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과 수급권자 소득기준을 확대하는 경우의 총 재정소요액은 [표 39]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 2,422억원, 2011년 7,579억원 등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4조 5,496억원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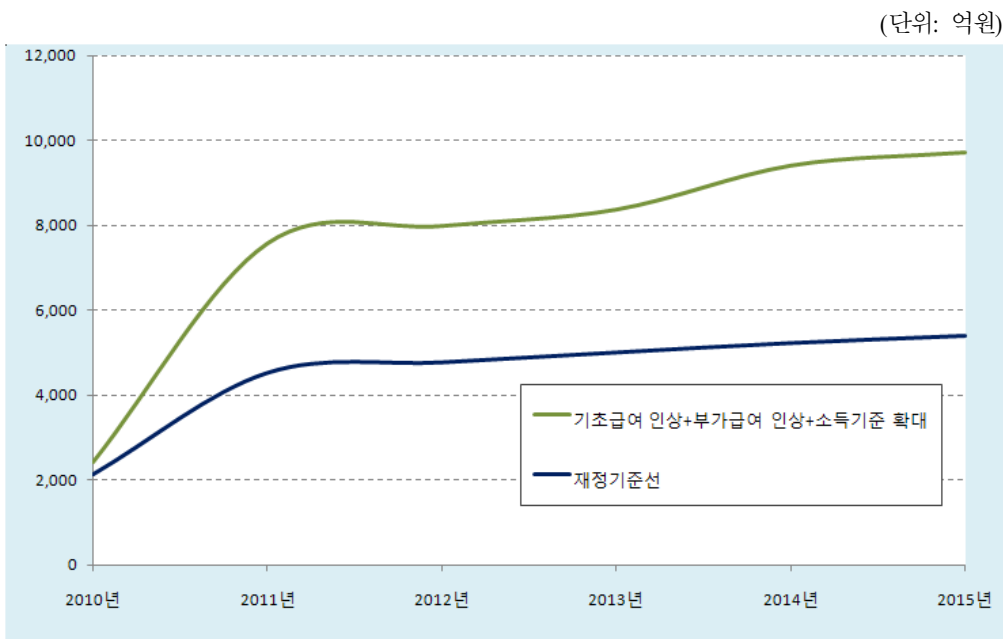
기준 2조 7,012억원이 소요되는 재정기준선과 비교한 추가적 재정소요액은 2010년 294억원, 2011년 3,062억원, 2014년 4,192억원 등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조 8,484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38] 시나리오 3: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과 소득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적 재정소요액: 2010~2015년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기초급여	294	613	635	654	1,339	1,363	4,899
부가급여	0	2,449	2,590	2,724	2,853	2,970	13,585
합계	294	3,062	3,225	3,378	4,192	4,334	18,484

[그림 7] 시나리오 3: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과 소득기준 확대에 따른 총 재정소요액: 2010~2015년



[표 39] 시나리오 3: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과 소득기준 확대에 따른

총 재정소요액: 2010~2015년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기초급여	1,469	3,067	3,177	3,270	4,017	4,090	19,091
부가급여	953	4,512	4,811	5,105	5,394	5,631	26,406
합계	2,422	7,579	7,989	8,375	9,411	9,721	45,496

#### 4. 소 결

정책변수의 조합에 따른 각각의 시나리오의 추가적 재정소요는 [표 40] 와 같다. 시나리오 1에 따라 기초급여를 인상하는 경우의 추가적 재정소요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81억원, 시나리오 2에 따라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를 인상하는 경우의 추가적 재정소요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조 562억원, 시나리오 3에 따라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과 소득기준을 확대한 추가적 재정소요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조 8,484억원으로 예상된다.

[표 40] 시나리오별 추가적 재정소요액: 2010~2015년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시나리오 1	0	0	0	0	536	545	1,081
시나리오 2	0	1,705	1,806	1,902	2,530	2,618	10,562
시나리오 3	294	3,062	3,225	3,378	4,192	4,334	18,484

주: 1. 시나리오 1: 기초급여 인상

2. 시나리오 2: 기초급여 인상 + 부가급여 인상

3. 시나리오 3: 기초급여 인상 + 부가급여 인상 + 소득기준 확대

시나리오별 총 재정소요는 [표 41] 및 [그림 8]과 같다. 현재의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2조 7,012억원이며, 시나리오 1에 따라 기초급여를 인상하는 경우 총 재정소요는 2010년부터 2015

년까지 총 2조 8,093억원, 시나리오 2에 따라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를 인상하는 경우 총 재정소요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3조 7,574억원, 시나리오 3에 따라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를 인상하고 소득기준을 확대하는 경우 총 재정소요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조 5,49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 시나리오별 총 재정소요액: 2010~2015년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재정기준선	2,128	4,517	4,763	4,997	5,220	5,387	27,012
시나리오 1	2,128	4,517	4,763	4,997	5,755	5,933	28,093
시나리오 2	2,128	6,222	6,570	6,899	7,750	8,006	37,574
시나리오 3	2,422	7,579	7,989	8,375	9,411	9,721	45,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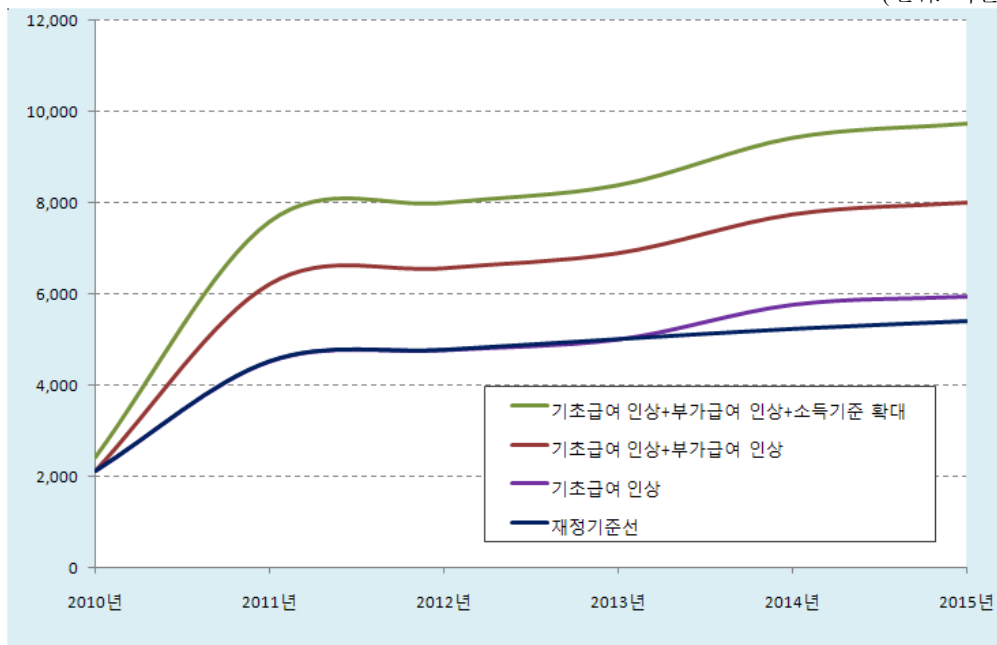
주: 1. 시나리오 1: 기초급여 인상

2. 시나리오 2: 기초급여 인상 + 부가급여 인상

3. 시나리오 3: 기초급여 인상 + 부가급여 인상 + 소득기준 확대

[그림 8] 시나리오별 총 재정소요액: 2010~2015년

(단위: 억원)



## VI. 결 론

기초장애연금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바에 따라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중증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부조 형식의 자격급여로서, 장애인의 소득 보전과 기존 장애급여의 사각지대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운용의 관점에서 기초장애연금은 법령에 의한 의무지출 사항으로서, 수급권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급여지출 의무가 발생하므로 수급권자의 설정 및 급여액의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재정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본고는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향후 동 제도가 확대되는 경우에 대한 주요 정책변수별 가정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소요액을 산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책변수별 가정을 결합한 시나리오에 대한 총 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이로 인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초장애연금법안」과 2010년도 예산의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그 결과 산출된 재정소요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2010년 2,128억원(6개월 분), 2011년 4,517억원 등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2조 7,012억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2010년 첫째 2,200억원으로 추계된 정부 추계액과 비교하여, 첫째 3.3%(72억원) 적게 추계되었으나, 이후에는 그 차이가 점차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기초장애연금의 재정소요를 기존 중증 장애수당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의 재정소요와 비교한 결과 2010년 659억원, 2011년 1,346억원 등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7,474억원이 증가하여, 기존 중증장애수당 재정소요 대비 38.2%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정투입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둘째, 기초장애연금제도를 확대하는 경우에 대한 세 가지의 정책변수 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산출하였다. 기초장애연금 확대의 가정은 1) 「기초장애연금법안」의 부칙에 따라 2028년까지 기초급여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2)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2011년 부가급여를 장애

로 인한 추가비용의 상당 수준을 보전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는 경우, 3) 2010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수급권자의 소득기준을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경우로 가정하였다.

그 결과, 1) 2014년부터 기초급여를 A값의 5%에서 6%로 인상 시 2014년 연간 536억원 등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81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며, 2) 2011년부터 부가급여를 5만원 인상하는 경우 2011년 연간 1,705억원 등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9,481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또한 3) 기초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소득기준을 소득하위 56%에서 70%로 확대하는 경우, 2010년 294억원, 2011년 613억원 등 2015년까지 총 3,548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세 가지 정책변수 중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미치는 영향은 부가급여를 인상하는 경우가 가장 크며, 수급권자 소득기준 확대, 기초급여 인상 등의 순으로 크다. 단, 소득기준 확대는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므로,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를 인상하는 경우 상호작용에 의해 더 큰 재정소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변수 설정 근거 및 추가재정소요]

변수	내용	근거	연간 추가 재정소요	추가재정소요 (전체)
기초급여 인상	2014년부터 기초급여를 A값의 5%에서 6%로 인상	「기초장애연금」 부칙 제4조	연간 536억원 (2014년)	1,081억원 (2014~2015년)
부가급여 인상	2011년부터 부가급여를 5만원씩 인상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부대의견	연간 1,705억원 (2011년)	9,481억원 (2011~2015년)
수급권자 소득기준 확대	수급권자의 범위를 소득하위 56%→70%로 확대	2010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연간 613억원 (2011년)	3,548억원 (2010~2015년)

셋째, 정책변수별 가정을 결합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총 재정소요액을 추계한 결과, 현재의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따른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소요액 총 2조 7,012억원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2조 8,093억원에서 최대 4



조 5,496억원 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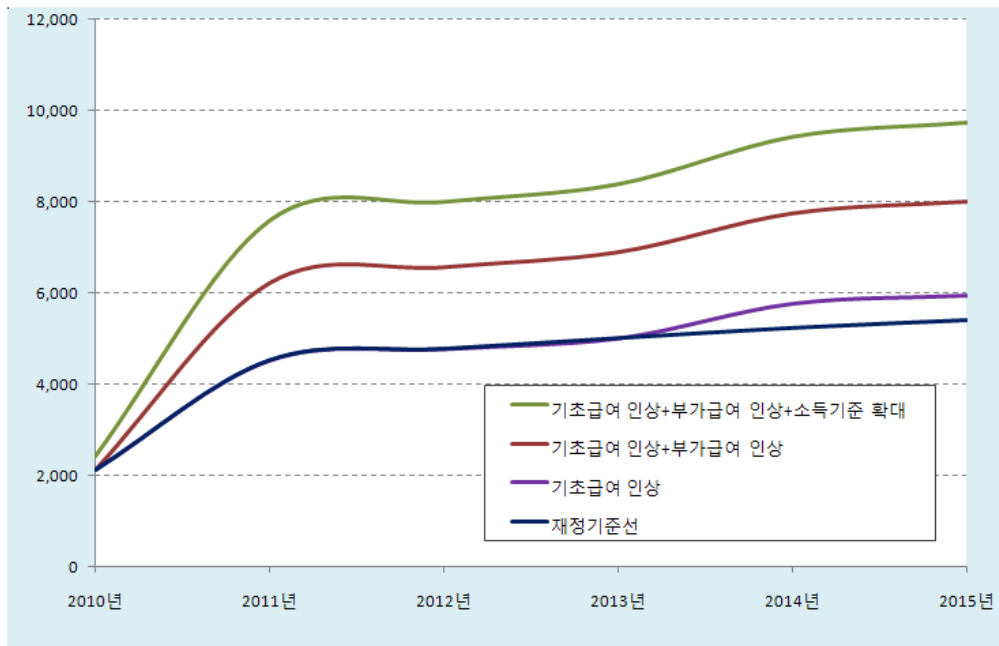
[시나리오별 총 재정소요액: 2010~2015년]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재정기준선	2,128	4,517	4,763	4,997	5,220	5,387	27,012
기초급여 인상	2,128	4,517	4,763	4,997	5,755	5,933	28,093
기초급여 인상 + 부가급여 인상	2,128	6,222	6,570	6,899	7,750	8,006	37,574
기초급여 인상 + 부가급여 인상 + 소득기준 확대	2,422	7,579	7,989	8,375	9,411	9,721	45,496

[시나리오별 총 재정소요액: 2010~2015년]

(단위: 억원)



현재의 「기초장애연금법안」의 내용에 시나리오 1에 따라 ‘기초급여를 인상’하는 경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2조 8,093억원, 시나리오 2에 따라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를 인상’하는 경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3조 7,574억원, 시나리오 3에 따라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를 인상하고 수급권자 소득기준을 확대’하는 경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4조 5,496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 문헌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9.11.
-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분야 재정분석”, 「2010년도 예산안 분석(IV)」, 2009.11.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 기준선 전망」, 2008. 4.
- 변용찬 외,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변용찬 외,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신경혜, 「중기재정추계모형 개선 및 중기재정전망」, 국민연금연구원, 2009.4.
- 우주형, “우리나라 장애인연금법제 도입방안 연구”, 「재활복지」 vol.13, No.1, 2009.3.
- 유동철, “기초장애연금의 동향과 쟁점”, 「복지동향」 통권 제128호, 2009.6.
- 윤상용 외,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3.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9 장애인 통계」, 2009.11.



## [부 록 1]

### 기초장애연금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기초 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 이하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기초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장애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7.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 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 그 밖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장애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장애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역전(逆轉)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 의욕 및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기초장애연금의 종류 및 내용) 이 법에 따른 기초장애연금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填)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2.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제4조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수급권자 중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부가급여액)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초장애연금의 신청) ①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장애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기초장애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장애

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초장애연금을 신청할 때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기초장애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장애연금 신청의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장애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장애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2.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지급계좌 등 기초장애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 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와 장애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하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소득·재산 및 장애등급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노령연금, 출입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입소·출소, 매장·화장·장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와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및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기초장애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⑩ 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재심사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초장애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초장애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초장애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기초장애연금의 종류 및 지급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권자에 대한 제2항의 통지는 제8조에 따른 기초장애연금 지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조사 및 수급권자의 장애등급의 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제9조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11조(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수급자에 대한 기초장애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의 자료제출, 관련 자료의 이용, 그 밖에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한 기초장애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기초장애연금 지급을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수급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제공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은 그 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초장애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기초장애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② 기초장애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기초장애연금 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장애연금) 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초장애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기초장애연금의 청구 절차·방법, 유족의 범위와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기초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

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2. 수급자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수급자의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되어 사실상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에 해당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초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권자, 수급자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기초장애연금의 환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기초장애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가 받은 기초장애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장애연금을 받은 경우

2. 기초장애연금을 받은 후 그 기초장애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

여 소멸한 경우

###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초장애연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초장애연금을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초장애연금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압류금지 등) ① 수급자에게 기초장애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수급자는 기초장애연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0조(시효) 수급자의 기초장애연금을 받을 권리와 제17조에 따른 기초장애연금을 환수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제21조(비용의 부담) 기초장애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한다.

제22조(기초장애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가족부장은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7조와 관련된 기초장애연금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장애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①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6항(제1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12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2.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장애연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초장애연금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 ① 제9조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및 장애등급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초장애연금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에 따른 기초장애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중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중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제8조에 따라 기초장애연금을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의 재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제5조에 따른 기초장애연금의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초급여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장애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기초장애연금법」

## [부 록 2]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부대의견

1.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수준에 해당하는 기초장애연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국회 및 보건복지가족부는 2011년부터 「기초장애연금법」의 부가급여액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상당 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법안비용추계 제 1 회]**

### **2010~2015년 기초장애연금 재정소요 추계**

---

발 간 일	2010년 2월 12일
발 행 인	신 해 통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2070·3114
편 집 인	김 호 성
편 집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2팀
인 쇄 처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2팀 (TEL 02·788·4650)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ISBN 978-89-6073-294-0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0